

## 경운대학교 학생상벌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에 의거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학칙 제75조 포상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자치 기구에서 발생된 징계사항 심의

**제4조(재가)**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 제2장 포 상

**제5조(포상)** 학생이 학칙 제7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1. 성적 최우수상 :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 성적이 최고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2. 성적 우수상 : 각 학과(전공) 졸업생중 4년간의 합산 성적이 최고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3. 공로상
  - 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력이 탁월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 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 명예를 높인 자
  - 다.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
4. 선행상 :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특별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한 자로서 외부의 시상요청이 있을 때에 수여

**제6조(포상 발의)**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소속 학부(과)장은 다음의 서식에 의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표창추천서
2. 공적조서

### 제3장 징 계

**제7조(징계)** 학생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8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미만의 근신에 처한다.

1. <삭제>
2. 언행이 불순하고 수강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자
3. 게시물을 무단으로 철거 또는 오손한 자
4. 교내환경(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파손한 자
5. 교내에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한 자
6. 단체행동에서 무단이탈한 자
7. 허가를 얻은 광고 및 인쇄물이라도 지정 또는 지시한 장소 외에 임의로 게시한 자
8. 교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음주로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9. 기타 학칙을 문란케 한 자

**제9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8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해당과목 또는 전 과목 무효)
3.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4. 교직원에게 협박 또는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교내·외에서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제10조(무기정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직원을 비방, 모독한 자
  3.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자
  4.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아니한 광고 및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5.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반출한 자
  6. 도박 행위를 한 자
  7. 기타 품행이 불량한 자
  8. 교내에 허가를 얻지 아니한 모임의 조직이나 가입, 활동을 한 자
- ②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과장의 지도결과 보고서를 첨부, 당해 학부(과)장의 발의에 의하여 총장이 정상을 참작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자
3.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 직분을 욕되게 한 자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학원 내에서 정치적 목적의 모임을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을 한 자
6. 성품이 불량하여 학업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제12조(징계절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부(과)장은 다음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총장 재가 시에는 6, 7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건경위서
2. 비위사실진술서
3. 징계혐의자 명단
4. 징계사유설명서
5. 징계혐의자주장서
6. 징계의결서
7.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 학생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하여 징계에 따른 소정의 과제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상실)** 경운대학교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은 자는 학생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리가 상실 또는 정지된다.

**제14조(처벌의 감면)** 총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통보)** ① 학생처장은 징계사실을 관계부서와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은 징계사실을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총장에게 징계처분보고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학적부 등재)** 징계 처분자에 대하여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단, 졸업 시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